

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2 - 122호

『인천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』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2년 8월 30일

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

인천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안이유

- 가.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조성하여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·고령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증가 등 사회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
- 나.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여 사회 전반에 걸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시장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

수립·시행하여야 함.(안 제3조)

나.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6조)

다.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한 기업 등의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8조)

라.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족친화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10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19일(수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, 팩스 또는 이메일로 인천광역시의회(참조 : 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, 전화032-440-6223, 팩스 032-440-8764, 이메일 misoranda@korea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주소·성명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) 및 전화번호

제출자	해당 조항	찬반여부 및 사유	비고
○주 소 : ○성 명 : ○연락처 :			

※ 다른 서식 사용 가능

인천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조성하여 일과 가족의 양립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「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인천광역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사업주의 책무) ① 사업주는 가족친화제도의 도입·확대 등 가

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사업주는 가족친화제도의 운영에 있어 근로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시행계획의 수립 등) ① 시장은 법 제5조의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(이하 "시행 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도록 하여야 한다.

1. 시장과 군수·구청장의 협력 사항
2. 민간 관계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사항
3.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

제6조(계획수립의 협조) ①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관계 공공기관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7조(실태조사 등) ① 시장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정책의 수립·시행을 위하여 기업·공공기관 및 마을의 가족친화 조성 실태에 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,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.

제8조(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) ① 시장은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고 기업 등의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가족친화제도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
2.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컨설팅
3. 직장 가족친화 교육 실시 및 강사 양성
4. 가족친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
5. 가족친화 우수기업 선정 및 포상
6. 그 밖에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다.

제9조(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 촉진) ① 시장은 가족친화 마을환경

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
1. 가족친화 마을 모델의 개발·보급
2. 가족친화 시설 조성 지원
3. 지역사회 가족 돌봄 프로그램 개발·지원
4. 마을환경의 가족친화적 요소 평가
5.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·홍보

② 시장은 가족친화 마을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.

제10조(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 등) ① 시장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족친화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.

② 가족친화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가족친화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
2. 가족친화 프로그램의 개발
3.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컨설팅
4. 가족친화제도 및 가족친화사례 정보의 수집·제공 등
5.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한 각종 연구, 조사 및 홍보, 직장보육에 대한 홍보
6.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필요한 사업

③ 시장은 지정한 가족친화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

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제11조(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평가) ① 시장은 법 제9조의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.

제12조(가족친화 기업 지원)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에 대하여 사업성과 평가 등에 따라 융자대상 선정 시 또는 경영안정 등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.

제13조(표창) 시장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「인천광역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.

1.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이바지한 사람
2.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이바지한 기관·단체

제14조(시행규칙)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	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- 제2조(정의) - 제3조(국가 등의 책무) - 제4조(사업주의 책무) - 제6조(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 - 제10조(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평가) - 제11조(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) - 제13조(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 촉진) - 제19조(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 등) - 제22조(권한의 위임·위탁)
관련법규 정비대상	
관련자료	

관계법령 발췌사항

[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]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가족친화 사회환경"이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고,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말한다.
2. "가족친화 직장환경"이란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직장환경을 말한다.
3. "가족친화제도"란 다음 각 목의 제도를 말한다.
 - 가. 탄력적 근무제도 : 시차출퇴근제, 재택근무제, 시간제 근무 등
 - 나. 자녀의 출산·양육 및 교육 지원 제도 : 배우자 출산휴가제, 육아휴직제, 직장보육 지원, 자녀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
 - 다. 부양가족 지원제도 : 부모 돌봄 서비스, 가족간호휴직제 등
 - 라. 근로자 지원제도 : 근로자 건강·교육·상담프로그램 등
 - 마.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제도
4. "가족친화 마을환경"이란 노인부양이나 아동양육 등 가족 돌봄을 지역사회 차원에서 분담할 수 있는 환경 및 다양한 가족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시설과 공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족생활 여건이 갖추어진 마을환경을 말한다.

제3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사업주의 책무) ① 사업주는 가족친화제도의 도입·확대 등 가족친화 직장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사업주는 가족친화제도의 운영에 있어 근로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6조(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여성가족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 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고, 여성가족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.

③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및 그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0조(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평가) ① 여성가족부장관 및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.

제11조(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) ①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고 기업 등의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가족친화제도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
2.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컨설팅

3. 직장 내 가족친화 교육 실시 및 강사양성
 4. 가족친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
 5. 가족친화 우수기업 선정 및 포상
 6. 그 밖에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②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다.

제13조(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 촉진) ①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
1. 가족친화 마을 모델의 개발·보급
 2. 가족친화 시설 조성 지원
 3. 지역사회 가족 돌봄 프로그램 개발·지원
 4. 마을환경의 가족친화적 요소에 대한 평가
 5.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·홍보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안에서 가족친화 마을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.
-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2항에 따른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9조(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 등) ①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족친화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.

- ② 가족친화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1. 가족친화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

2. 가족친화 프로그램의 개발
3.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컨설팅
4. 가족친화제도 및 가족친화사례에 대한 정보의 수집·제공 등
5.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한 각종 연구, 조사 및 홍보
- 5의2. 직장보육에 대한 홍보
6.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- ③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가족친화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- ④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·절차, 지정기간,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2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[별지 제2호 서식]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(제3조제3항 관련)

1. 비용 발생 요인

-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및 마을환경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컨설팅, 교육 및 홍보 등 예산이 수반될 수 있음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

3. 미첨부 사유

- 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에 따라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임.

4. 작성자

- 건설교통위원회 이 재 병 의원